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번없이 **1644-8295**로 전화하시면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자동연결 됩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 · 별 · 없 · 는 · 사 · 회 · 를 · 열 · 어 · 갑 · 니 · 다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차별없는 우리동네

활동지원사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이란

인권이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렇듯 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장애 · 비장애를 떠나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는 **다름**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의심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무관심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차별없는 우리동네
(활동지원사 편)

Contents

1. 장애와 장애인이란? 2
2. 장애와 관련한 올바른 표현 4
3. 장애인 활동지원 시 궁금한 것들 6
4. 장애인활동지원 중 사례 10
5. 장애인학대란? 14
6.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 16
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20
8.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22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24

1 장애와 장애인이란?

□ 장애와 장애인

'장애' 란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 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는 상대적 개념

눈이 나쁘다고 시각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경을 사용하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단지 신체적 특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특성이 외부 조건과 만나
불편함이나 제약으로 이어질 때 '장애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장애를 어떤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임산부, 고도비만, 외국인 이주자 등을 한시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특성이 제약과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장애는 없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안경을 쓰면 불편하지도 차별받지도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약과 차별없는 평등한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 문화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는 장애 자체가 아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차별과 환경적 장벽에서 발생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중 자주 만나게 되는 **장애유형**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골격 · 근육 · 신경 계통의 질환, 손상, 기능 및 발달 이상으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를 말합니다. ▶ 절단장애, 관절장애, 척추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장애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언어장애와 인지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물체를 식별하는 기능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시력이나 시야가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지적장애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와 일상생활에서 제한이 따르는 장애를 말합니다.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 장애	소아기 자폐증 ·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및 신체표현 · 자기조절 ·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를 말합니다.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 라고 합니다.

Q 혹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제도)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일 뿐,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는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속 제약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모두 보장 됩니다.

2 장애와 관련한 올바른 표현

□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어떤 표현이 맞나요?

‘장애인’ 이 맞는 표현입니다.

장애자의 ‘자’ 는 한자로 者(놈 자)를 사용하며
이러한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인식과 함께 변화하였습니다.

□ 그럼, ‘장애우’ 는 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와 친구가 되야하는 것처럼 강제하면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평등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비장애인’ 이라 표현합니다.

장애인에 대비되는 표현을 어떤 말로 사용할지는 그 사회의 인권수준을 반영한 약속입니다.
‘정상인’ , ‘일반인’ 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장애인은 항상 비정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재는 ‘장애를 갖고 있다 (장애인) /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 (비장애인)’ 라는
두 사람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적절한 표현	올바른 표현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꿀 먹은 벙어리	적절하게 의사표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
눈먼 돈	관리 안 되는 돈
벙어리 냉가슴 앓다	말도 못 하고 혼자서 가슴만 답답하다
벙어리 장갑	손모아 장갑 · 엄지손 장갑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
외눈박이 방송	편파 방송
절름발이 정책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
눈깔이 멀었냐?	똑바로 봐라, 제대로 판단해라, 그것도 못 보냐?
병신 육갑을 한다.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마라. 상황판단을 잘해라
지랄한다 (뇌전증을 비하하는 용어)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가볍게 굴지 마라, 생떼 쓰지 말라
귀머거리 삼 년, 벙어리 삼 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불구가 되다	장애를 갖게 되다
눈 뜬 장님	보고도 판단을 못 하는
장님 코끼리 뒷다리만 지기	전체를 모르면서 하는 어리석은 판단

TIP! 장애인 VS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장애인’ 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면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이세요?” 혹은 “장애인 000씨” 라고 부를 경우,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그냥 “000씨” 라고 이름을 부르거나,
장애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라고
가볍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시 궁금한 것들

1_ 활동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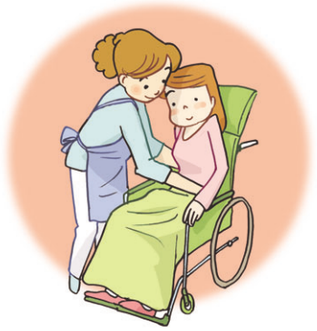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하는 활동으로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용인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이러한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인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이자 권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2_ 자기결정권이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거, 직업, 교육, 사회활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인의 선택이나 의사결정 시 활동지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이용인의 결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주요 활동 목적 중에 하나 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인의 장애 정도나 유형과는 상관없이
이용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3_ 이용인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용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일반적인 음성언어로만 소통하려는 태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음성언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온전한 문장의 말보다는
표정이나 몸짓, 짧은 음소절이나 음성의 강약 등으로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젖먹이 아기와 부모가 문장으로 소통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호도나 호불호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용인의 다양한 표현(말, 음성, 몸동작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_ 병원에서 의사가 활동지원사인 나에게 자꾸 물어봐요

이용인과 함께 병원을 가거나, 이웃을 대하거나, 업무 · 민원처리 등의 일을 지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당사자인 이용인 대신 활동지원사와 이야기를 나누려 하여
이용인을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화의 주체는 이용인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용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결정은 이용인의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_ 이용인의 가족들이 무리한 부탁을 해요

이용인 또는 가족들이 활동지원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리한 부탁은 자칫하면 곤란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활동지원 업무는 계약에 준하여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활동입니다.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부탁은
서로를 위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6_ 통장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일인가요?

이용인이 금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사가 자연스럽게 통장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상, 개인재산에 관한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임의적으로 이용인의 금전 및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금전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 원칙을 꼭 기억하고
사전에 중개기관과 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꼭 갖추어야 합니다.

7_ 음식을 과도하게 먹거나 편식을 많이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용인의 과다한 음식섭취 또는 편식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이용인의 요구를 제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행동들로 인해 건강이나 생활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활동지원사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합당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용인의 결정권이 활동지원사의 걱정보다 우선하며,
이용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인의 결정을 강압적으로 막는 행위는 더욱 부적절합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중 사례

다~ 너를 위한거야!!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못한 Y양과 언니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년동안 활동지원사의 지원과 함께 성장한 Y양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활동지원사는 Y양에게 자립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번 설거지와 속옷 손빨래를 시켰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 타인과 합의가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활동지원사가 대신 합의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Y양은 이러한 상황이 속상하기는 하지만
활동지원사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헤어지게 될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활동지원사는 이용인의 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이지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자립훈련은 관련 센터 등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일들은 이용인과 활동지원사가 오랫동안 너무 가깝게 지내다보니 발생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는 활동지원사 개인적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타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용인의 의사결정 · 이행을 지원하고
이용인의 '자립 지원' 이라는 본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얼마예요?

H씨와 O씨는 지적장애 부부입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는 두 사람이 현재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활동지원사가 '장애가 있어 금전관리를 잘 못한다.' 는 이유를 들어
대신 통장을 관리하며 사용내역 등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 해보니 활동지원사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가 다수 있었으며,
일부는 다시 입금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금출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에 대한 증빙기록 또한 없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부부가 인터넷 거래를 못하니 대신 주문해 주고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되돌려 받은 것이며,
현금이 필요할 때 대신 출금해서
전달해 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부부는 현재, 본인 통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통장엔 얼마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활동지원사는 동의 없이 금전을 무단으로 활용하며,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기억해 주세요

간혹 이용인의 '금전관리가 잘 안된다' 는 이유로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활동지원사가 임의적으로 대신 하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개인재산의 소유 및 관리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금전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개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례

나는 먹는 게 좋은데~~

발달장애인 J씨는 맛있는 음식 먹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식사량에 비해 운동량이 적어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건강을 걱정한 활동지원사는 다이어트 하기를 요구하였고, J씨는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는 J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본 지인들이
"싫다는데 강제로 시키는거 아냐?" 라고 묻자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금 뭘 하는지도 잘 몰라.
알아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건강해지지! 살이 너무 쪘어."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본인 의사에 반하여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행위,
모욕적인 비하 발언 등은 대표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 기억해 주세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장애인학대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의 습관적인 행동이나 생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는 해야 하나, 음식을 적게 주거나 다이어트를 강행하는 등의 행위는
비록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용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름 선의라고 하더라도, 혹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항상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신체적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정서적학대

언어적 · 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장애인학대는 단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유기

보호 ·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 ·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6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

사례 장애인을 상대로한 핸드폰 사기개통

지적장애가 있는 E씨는 동네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핸드폰 개통 당시 직원으로부터 추가 상품에 대한 가입 권유를 받았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엄청난 액수의 요금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E씨는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해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활동지원사는 이유를 물었고,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요금 외에
다른 상품이 추가되어 많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사용하지도 않는 핸드폰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활동지원사는 곧바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생각해봅시다

○ 무엇이 잘 되었을까요?

E씨가 개통하고자 했던 핸드폰외에 본인이 원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상품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고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기억해 주세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핸드폰 개통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건 대응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대응을 포기하거나, 신경쓰는 것이 싫어서 외면하는 경우
피해자는 신용불량, 통장압류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나 상담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가족에 의한 금전착취

지적장애가 있는 J씨는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며 홀로 생활을 합니다.
인근에 가족이 있어 가끔 왕래를 하기도 하며, 한 달에 한 번씩 매형이 방문을 하는데,
이상하게 매형이 오는 날이면 J씨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고,
어느 때는 언성이 높아지며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활동지원사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더니,
매형이 수급비를 자동이체나 현금출금으로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활동지원사는 해당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생각해봅시다

○ 무엇이 잘 되었을까요?

J씨는 경제적 착취 외에도 여러 가지 학대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매형의 지속적인 가해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J씨는 누군가에게 먼저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기에 매우 어려워하고 있었고,
활동지원사의 관심이 신고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기억해 주세요

장애인 학대의 특성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 하여,
타인의 신고로 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인의 일상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학대피해를 겪고 있는 이용인의 피해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례 틀을 깨는 현명한 판단

지적장애가 있는 S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오빠와 함께 단 둘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기에 어려운 주택구조와 코로나의 영향까지 더해져
집안에서만 생활하였고 외부와의 소통은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매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고, 오빠가 S씨를 구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활동지원사가 목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S씨의 다리에 크게 멍이 들어있어서,
활동지원사가 이유를 물어보니
오빠가 밀어 넘어져서 생긴 상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상처 사진을 찍고
이를 토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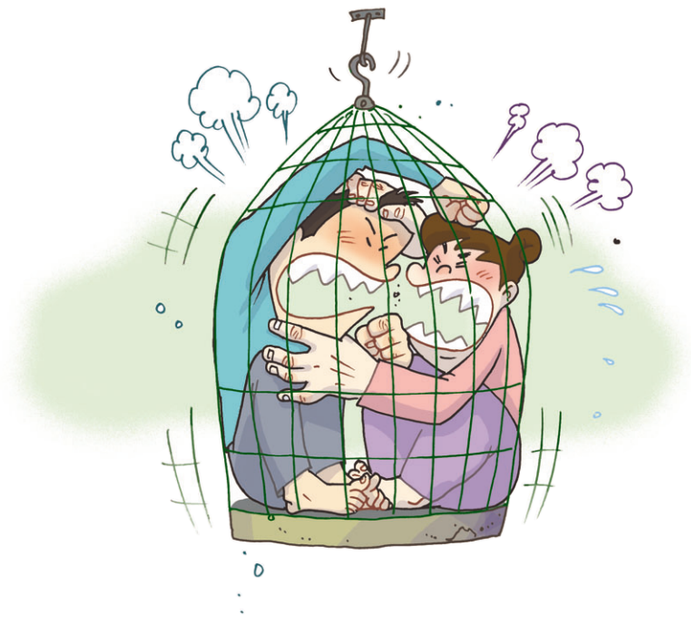

생각해봅시다

○ 무엇이 잘 되었을까요?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신고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에게 주어질 처벌이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례는 주저하지 않고 신고를 하여,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은 사례입니다.

○ 기억해 주세요

이 남매의 집은 난간 없는 가파른 계단으로 된 오래된 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오빠는 계단에서의 낙상 위험과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갈 때만 S씨와 함께 외출을 할 정도 였습니다.
오빠는 S씨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본인의 다리 치료는 미루었고
치료 시기를 놓친 다리는 괴사가 진행중인 상태였습니다.
열악한 생활환경이 남매의 관계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고 학대로 이어졌던 사례였습니다.

가관에서는 오빠의 병원치료와 입원기간 동안 동생이 지낼 임시 주거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대 주택을 신청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현명한 판단이
남매가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일 뿐, 학대신고의 의무는 없다?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누구나 학대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장애인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학대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이러한 사유로 학대신고의무자로 분류되고,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가 주어진 사람이 학대(행위)를 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 관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이 종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조사원 등
의료 관련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등
교육기관 관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 · 학교의 교사 ·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상담소및 지원기관	성폭력 · 성매매 피해, 가정폭력,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등 관련 상담소 및 보호기관의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제 2항)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되나요?

장애인학대 사건과 관련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보장이 필수이며,
학대 신고 시 법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여 불이익과 곤경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
-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6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장애인 학대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 **1644-8295**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12** 경찰서로 신고해주세요.

*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 방법**

전 화	1644-8295, 031-851-1007
문 자	010-3341-1005
팩 스	031-851-1008
방문/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이 메 일	ggndrc@gmail.com
온 라 인	홈페이지(https://www.ggnaapd.or.kr) 〉 온라인 상담실 〉 신청하기

8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 주요 관련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https://ggnaapd.or.kr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 182	https://www.ggbpolice.go.kr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119, 031-849-2710	https://119.gg.go.kr/north
보건복지상담센터(복지콜)	129	http://www.129.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klac.or.kr
국가인권위원회	1331	https://www.humanrights.go.kr
질병관리청	1339	http://www.cdc.go.kr
고용노동부	1350	http://www.moel.go.kr
발달장애인지원센터(경기지역센터)	031-548-1393	https://broso.or.kr/gyeonggi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1366, 031-873-1366	http://ggbb1366.or.kr
청소년긴급전화	1388	https://www.cyber1388.kr:447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https://labor.gg.go.kr/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52-1202	http://www.ggfamily.or.kr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556-0660	http://www.gurifamily.or.kr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48-8980	http://www.ujbfamily.co.kr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544-9195	http://pcfamily.kr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33-5533	http://ycfamily.or.kr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945-8050	http://pjfamily.co.kr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075-3647~3652	

■ 장애인복지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031-856-5300	https://www.gbw.or.kr
가평군장애인복지관	031-581-9785	http://www.gapyeongjb.or.kr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http://goyangrehab.or.kr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562-0068	http://guriwel.or.kr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031-592-7150	http://nyjwel.or.kr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031-574-2668	http://www.nyjbrc.com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867-0080	http://www.ddcjb06.net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8-4090	http://www.yjwel.or.kr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850-5300	https://www.warmhand.or.kr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59-7020	https://www.pajurehab.or.kr

■ 장애인보조기기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031-852-7363	http://atrac.or.kr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11-8080	https://cafe.daum.net/GcIL
사람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8803-8448	http://cafe.daum.net/personinil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08-7712	http://aramcil.com/new
일산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27-9945	http://www.ilsanlove.org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18-7377	http://cafe.daum.net/djdnfjrltnlaxj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06-3095	http://www.ggableforum.or.kr
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14-0423	http://www.funilct.or.kr
구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555-5712	https://guriil.modoo.at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7530-4407	http://www.dscil.or.kr
남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594-3203	http://www.nyjcil.or.kr
동두천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862-0420	http://www.ddcil.or.kr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847-3431	https://yjdddtv.modoo.at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841-6121	https://yjcil.or.kr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832-9711	http://cafe.daum.net/ycilcenter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841-7397	http://ujbcil.org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031-853-0037	https://www.facebook.com/seumil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루터기	0507-1472-8102	https://cafe.daum.net/GrootergyCIL
파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53-3763	http://www.pajucil.kr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45-1305	https://freewaycil.modoo.at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42-4087	https://cafe.naver.com/sunfloweril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531-2023	https://cafe.daum.net/pcnanumIL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531-6368	https://cafe.daum.net/pochonIL

■ 야학 · 평생교육지원센터

두드림장애인학교	031-864-7447	https://cafe.daum.net/ddmschool
채움누리학교	031-851-8103	https://cafe.daum.net/chaiumnuri
포천장애인학교	031-544-7351	-
함께여는새날	031-531-2023	-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31-523-2425	http://guri-edu.or.kr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031-821-9960	https://www.urp.or.kr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대응 전문기관이며,
경기북부 10개 시 · 군의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신고를 받고, 피해장애인을 위한 회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 장애인 차별 상담과 현장조사 · 피해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합니다.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학대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할 때
- 쉼터 등 안전한 장소로 입소 지원
- 치료나 즉각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할 때
- 미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 피해장애인에게 긴급생계비 및 주거 지원 등이 필요할 때
- 피해장애인에게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이 필요할 때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

○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진행 시 조력 지원이 필요할 때
- 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나 고발 절차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등 다양한 법률지원

-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 장애인을 만났는데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나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1644-8295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차별없는 우리 동네 (활동지원사 편)

발행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행일 2022.12.
편집제작 젊은기획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yeonggibukb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1813)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전화 031-851-1007 / 팩스 031-851-1008 / 메일 ggndrc@gmail.com / 누리집 www.ggnaapd.or.kr